

결연확인서

양부모가 되려는 사람	부	성명	생년월일(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)
		주소	
	모	성명	생년월일(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)
		주소	
양자가 될 아동	성명	생년월일	
	등록기준지	주소	
결연 심의일	년 월 일		
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연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